

# 예 산 총 칙

201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49,436,473	16,483,094
일반회계	485,752,572	14,572,577
특별회계	63,683,901	1,910,517
공기업특별회계	61,795,685	1,853,871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2,335,067	970,052
하수도사업특별회계	29,460,618	883,819
기타특별회계	1,888,216	56,646
지하수특별회계	424,819	12,745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378,271	41,348
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	85,126	2,554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962,308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,152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(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)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|   |  |
|---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</li> <li>3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</li> </ol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</li> </ol> |
|---|--|